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1, 2,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환 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하게 할수 있다. 제1항 제1호중 '4회를 3회'로, 2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3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조 (결손처분) 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부산직할시 남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 '을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의료보호법 제21조의 -----</p> <p>-----</p> <p>-----</p> <p>-----</p> <p>-----</p> <p>-----</p> <p>-----</p> <p>-----</p>
<p>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p>	<p>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자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p>
<p>② 생 락</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 원인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p> <p>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p>	<p>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 ----- 다만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하게 할수 있다.</p> <p>1. -----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p>
<p>제9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p> <p>1. 3 생 략 4.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p>	<p>제9조 (결손처분) ----- -----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p>1. 3 현행과 같음 4.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의 ----- ----- ----- -----</p> </p>